

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3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8.

발 의 자 : 서범수·김소희·박정하
이헌승·이양수·송석준
추경호·김기웅·신성범
박충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 등 전국 경찰관서에 설립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전국단위의 연합협의회를 경찰청 본부에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,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음.

그런데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조직이 18개의 시·도경찰청과 그 산하의 경찰서 259개소, 지구대 630개소, 파출소 1,415개소 등으로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, 경찰청 본청에 두는 하나의 연합협의만으로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18개의 시·도 경찰청에 연합협의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시·도 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신의 처우

개선 및 권익 보호 등을 시·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기
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호 신설).

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중앙행정기관”을 “중앙행정기관(경찰청은 제외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4호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연합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.

4. 경찰청 및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경찰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연합협의회) ① 협의회 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 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제2조의2(연합협의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다만, 제4호의 경우에는 하나
2.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에 따 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	이상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.
3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. ----- -- <u>중앙행정기관(경찰청은 제</u> <u>외한다)</u> ----- -----
②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	4. <u>경찰청 및 특별시·광역시·</u> <u>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</u> <u>의 경찰청</u>
	② (현행과 같음)